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325 |
|----------|-----|

발의연월일 : 2024년 8월 14일

발의자 : 경수현, 고영옥, 박영섭,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 1. 제안이유

가.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9645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8. 17.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가 구청장으로 하여금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하여 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나. 구민의 금연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게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안 제5조제1항제3호)
- 나.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 제5조제1항제7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건축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 건강정책과, 건축과
- 라. 입법예고 : 2024. 8. 20. ~ 2024. 8. 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민의 건강보호를”을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 증진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학교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를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 단,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u>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u>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u>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 증진을</u> -----<br>-----<br>--.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u>학교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u>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3. -----<br><u>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u> -----<br>-----<br>-----.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7.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u>설치된 공개공지. 단,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
| 7. (생    략)                                                                        | 8. (현행 제7호와 같음)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18조(금연지도원의 해촉) ① (생    략)                                                         | 제18조(금연지도원의 해촉) (현행 제1항과 같음)                                                   |